

인천광역시 영종구

구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.



선 결	기 관 의 장

제 12 호

2026년 8월 31일 월요일

차 례

공 고

-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-1514호 (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208호선, 소로3-10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·열람)
- 인천광역시영종구공고 제2026-1516호 (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)

회 람								
--------	--	--	--	--	--	--	--	--

발행 : 인천광역시 영종구

편집 : 홍보미디어실

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208호선, 소로3-10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·열람

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208호선, 소로3-10호선)사업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0조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대하여 주민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6. 8. 31.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

1. 실시계획 변경사유

- 지적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

2. 사업시행지의 위치(변경없음)

- 인천광역시 영종구 을왕동 627번지 일원

3. 사업의 종류 및 명칭(변경없음)

- 종류: 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208호선, 소로3-10호선)
- 명칭: 선녀바위 진입도로 개설공사

4.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(변경없음)

- 중로2-208호선: 연장(L)=137m, 폭원(B)=15m
- 소로3-10호선: 연장(L)=377.7m, 폭원(B)=6m

5.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(변경)

- 성명: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(건설과)
- 주소: 인천광역시 하늘중앙로 201

6.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(변경없음)

- 착수예정일: 실시계획인가일
- 준공예정일: 2027. 12. 31.

7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재지·지번·지목·면적, 소유권과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및 그 소유자·권리자의 성명·주소(변경): 붙임

8.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: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99조에 따름(변경없음)

9. 도시관리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에 관한 사항

○ 도로결정(변경) 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(km)	기점	종점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 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					
기정	중로	2	208	15	집산도로	517	을왕동 산64-4	을왕동 678-129	일반도로	-	인천시고시 (제1996-255호)	
변경	중로	2	208	15	집산도로	517 (137)	을왕동 산64-4	을왕동 678-129	일반도로	-		경미한 변경
기정	소로	3	10	6	국지도로	377	대3-305	을왕동 678-129	일반도로	-	중구고시 (제2017-130호)	
변경	소로	3	10	6	국지도로	377	대3-305	을왕동 678-129	일반도로	-		경미한 변경

※ ()는 금회 변경구간임

○ 도로결정(변경) 사유서

변경전 도로명	변경후 도로명	변경 내용	변경 사유
중로2-208	중로2-208	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경미한 변경 - A=8,459.8㎡ → A=8,463.1㎡ 증) 3.3㎡	○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소로3-10	소로3-10	○ 도시계획시설(도로) 경미한 변경 - A=2,524.4㎡ → A=2,481㎡ 감) 43.3㎡	○ 지적측량 결과에 따른 면적 변경

10.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

○ 열람기간: 공고일로부터 14일간

○ 의견제출

-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.

11. 열람장소

○ 인천광역시 영종구청(도시계획과, 032-760-7576, 영종구 하늘중앙로201 8층)

12. 관계도서: 게재 생략(열람 장소에 갖추어 둬.)

주 민 의 건 서

공 고 명	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로2-208호선, 소로3-10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·열람	
사업예정지	인천 영종구 을왕동 627번지 일원	
의견제출자	성 명:	생년월일:
	주 소:	전화번호:
도시계획시설(도로: 중2-208호선, 소3-10호선)사업 실시계획 인가 및 사업인정에 관한 공고·열람		

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실시계획과 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사업인정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.

2026년 월 일

의견 제출자

(서명)

영종구청장 귀하

인천광역시 영종구 공고 제2026-1516호

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많은 의견을 구하고자 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.

2026년 8월 31일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

「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□ 개정이유

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을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, 운영의 책임성·전문성을 강화하며,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□ 주요내용

- 가. 운영시간 정비(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2)
- 나.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(안 제11조제1항제2호카목)
- 다.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·면직 및 소속 공무원의 배치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2항)
- 라. 부가가치세 인용 조문 정비(안 별표 2)

□ 의견제출

○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·단체 및 개인은 2026년 09월 20일까지 인천광역시 영종구청장(참조: 평생교육과)에게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,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과(청소년팀)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개정안에 대한 찬·반 여부와 그 이유
- 기타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및 문의 전화번호

▷ 주 소 : (우23303) 인천광역시 영종구 하늘중앙로 201

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평생교육과(청소년팀)

▷ 전 화 : 032)760 - 7652 [FAX 032)760-7649]

□ 공청회 개최계획 : 없음

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: 2026. . .
제 출 자: 평생교육과장

1. 제안이유

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을 실제 운영 실태에 맞게 정비하고, 운영의 책임성·전문성을 강화하며,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용료 감면 기준을 현실에 맞게 완화하여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운영시간 정비(안 제4조제3항 및 별표 2)
- 나. 다자녀 가정 사용료 감면 기준 완화(안 제11조제1항제2호카목)
- 다. 지방공기업 대행 시 관장의 임명·면직 및 소속 공무원의 배치 근거 마련(안 제13조제2항)
- 라. 부가가치세 인용 조문 정비(안 별표 2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청소년기본법」, 「청소년활동진흥법」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입법예고 : 2026.
- 라. 기 타
 - 규제사전심사: 2026.
 - 부패영향평가: 2026.
 - 성별영향평가: 2026.

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영종구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오전 6시”를 “오전 9시”로 한다.

제11조제1항제2호카목 중 “세 자녀”를 “두 자녀”로 한다.

제13조에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·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소속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임명하여 해당 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.

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2]

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·수강료 상한
(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)

1. 사용료 상한(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)

구 분	시 간	사용료(원)	비 고
공연장 186석 (804㎡)	오 전 (09:00 ~14:00)	40,000	○ 부가가치세 별도
	오 후 (14:00 ~ 18:00)	60,000	
	야 간 (18:00 ~ 22:00)	80,000	
다목적체육관 (706.44㎡) · 풋살장 (400㎡)	주 간 (09:00 ~18:00)	20,000	○ 다목적체육관,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으로 한다.
	야 간 (18:00 ~ 22:00)	30,000	
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	1시간 1회 기준 (09:00 ~ 22:00)	5,000 (냉·난방포함)	

※ 비 고

- 1. 1회란 하나의 공연·전시·행사를 말한다.
- 2. 해당 시간에 대하여 선착순으로 신청한 경우 사용할 수 있다.
- 3. 기본 사용시간 미만을 사용하더라도 기본 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.
- 4. 준비 또는 예행연습을 위하여 대관할 경우의 사용료는 기본 사용료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5. 공연장 사용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가산한다.
 - 가. 30분 미만: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
 - 나. 30분 이상 ~ 1시간 미만: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
 - 다. 1시간 이상: 해당 기준 사용료의 100퍼센트
- 6.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.
- 7. 야간조명을 사용할 경우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별도로 징수한다.
- 8. 위 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용료는 수탁자(대행자)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.

2. 공연장 부대시설 사용료

구 분		단위	사용료(원)	비고	
냉·난방기		1회	20,000	냉방기	7월~8월 의무 사용
				난방기	11월~3월 의무 사용
프로젝트		1회	20,000		
음향시설	마이크	1회/3개	10,000	추가 개당 5,000원	
	핀마이크	1회/1개	10,000		
	피아노	1회	30,000	조율 필요 시 사용자 부담	
	앰프/스피커	1회	80,000		
무대조명	기 본	1회	20,000		
	포그머신	1회/1대	20,000	포그머신 리필액 별도 부담	
	무빙라이트 스팟	1일/1대	5,000		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휴관일 및 운영시간) ①·② (생략)	제4조(휴관일 및 운영시간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청소년수련시설의 운영시간은 <u>오전 6시부터</u> 오후 10시까지로 하고 세부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.	③ ----- <u>오전 9시</u> ----- -----.
④ (생략)	④ (현행과 같음)
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.	제11조(사용료 등의 감면) ① -----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50퍼센트 감면	2. -----
가. ~ 차. (생략)	가. ~ 차. (현행과 같음)
카. <u>세 자녀</u> 이상인 다자녀 가정의 청소년	카. <u>두 자녀</u> ----- -----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13조(위탁운영 및 지원) ① (생략)	제13조(위탁운영 및 지원) ①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이 청소년수련시설의 관리·운영을 대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을 총괄하는 관장을 소속 공무원(「지방공무원법」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) 중에서 임명하여 해당 시설에 파견할 수 있다.

현행	개정안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② (생략) [별표 2]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·수강료 상한 (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) 1. 사용료 상한(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시간</th><th>사용료 (원)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공연장 186석 (804㎡)</td><td>오전 (09:00~14:00)</td><td>40,000</td><td rowspan="3">○ 부가가치세 별도</td></tr><tr><td>오후 (14:00~18:00)</td><td>60,000</td></tr><tr><td>야간 (18:00~22:00)</td><td>80,000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다목적 체육관 (706.44㎡) · 풋살장 (400㎡)</td><td>조간 (06:00~09:00)</td><td>15,000</td><td rowspan="3">○ 다목적체육관,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.</td></tr><tr><td>주간 (09:00~18:00)</td><td>20,000</td></tr><tr><td>야간 (18:00~22:00)</td><td>30,000</td></tr><tr><td>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</td><td>1시간 1회 기준 (09:00~22:00)</td><td>5,000 (냉·난방 포함)</td><td></td></tr></table> ※ 비고 1.~ 5. (생략) 6. 부대시설 사용료는 따로 납부해야 하며, 부가가치세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14조에 따라 사용자가 따로 부담한다. 7.~ 8. (생략)	구분	시간	사용료 (원)	비고	공연장 186석 (804㎡)	오전 (09:00~14:00)	40,000	○ 부가가치세 별도	오후 (14:00~18:00)	60,000	야간 (18:00~22:00)	80,000	다목적 체육관 (706.44㎡) · 풋살장 (400㎡)	조간 (06:00~09:00)	15,000	○ 다목적체육관,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.	주간 (09:00~18:00)	20,000	야간 (18:00~22:00)	30,000	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	1시간 1회 기준 (09:00~22:00)	5,000 (냉·난방 포함)		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 [별표 2] 청소년수련시설 사용료·수강료 상한 (제4조제3항 및 제10조제1항 관련) 1. 사용료 상한(수강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) <table><tr><th>구분</th><th>시간</th><th>사용료 (원)</th><th>비고</th></tr><tr><td rowspan="3">공연장 186석 (804㎡)</td><td>오전 (09:00~14:00)</td><td>40,000</td><td rowspan="3">○ 부가가치세 별도</td></tr><tr><td>오후 (14:00~18:00)</td><td>60,000</td></tr><tr><td>야간 (18:00~22:00)</td><td>80,000</td></tr><tr><td rowspan="3">다목적 체육관 (706.44㎡) · 풋살장 (400㎡)</td><td colspan="2"><삭제></td><td rowspan="3">○ 다목적체육관,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.</td></tr><tr><td>주간 (09:00~18:00)</td><td>20,000</td></tr><tr><td>야간 (18:00~22:00)</td><td>30,000</td></tr><tr><td>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</td><td>1시간 1회 기준 (09:00~22:00)</td><td>5,000 (냉·난방 포함)</td><td></td></tr></table> ※ 비고 1.~ 5. (현행과 같음) 6. 부대시설 사용료는 별도로 납부하여야 하며,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경우에는 「부가가치세법」 제31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징수한다. 7.~ 8. (현행과 같음)	구분	시간	사용료 (원)	비고	공연장 186석 (804㎡)	오전 (09:00~14:00)	40,000	○ 부가가치세 별도	오후 (14:00~18:00)	60,000	야간 (18:00~22:00)	80,000	다목적 체육관 (706.44㎡) · 풋살장 (400㎡)	<삭제>		○ 다목적체육관,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.	주간 (09:00~18:00)	20,000	야간 (18:00~22:00)	30,000	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	1시간 1회 기준 (09:00~22:00)	5,000 (냉·난방 포함)	
구분	시간	사용료 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연장 186석 (804㎡)	오전 (09:00~14:00)	40,000	○ 부가가치세 별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오후 (14:00~18:00)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 (18:00~22:00)	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목적 체육관 (706.44㎡) · 풋살장 (400㎡)	조간 (06:00~09:00)	15,000	○ 다목적체육관,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간 (09:00~18:00)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 (18:00~22:00)	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	1시간 1회 기준 (09:00~22:00)	5,000 (냉·난방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구분	시간	사용료 (원)	비고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공연장 186석 (804㎡)	오전 (09:00~14:00)	40,000	○ 부가가치세 별도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오후 (14:00~18:00)	6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 (18:00~22:00)	8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다목적 체육관 (706.44㎡) · 풋살장 (400㎡)	<삭제>		○ 다목적체육관, 풋살장의 사용시간은 1일 2시간 으로 한다.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주간 (09:00~18:00)	2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	야간 (18:00~22:00)	30,000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동아리실, 프로그램실 등	1시간 1회 기준 (09:00~22:00)	5,000 (냉·난방 포함)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	

[부서용]

의견수렴서

검 토 구 분		유	무
검토사항	1. 관련 법령 위배여부 등 검토 2. 행정규제, 물가대책위 등 심의 3. 조직 및 예산수반협의 4. 주민의 권리 및 이익침해여부 5. 홍보계획(보도자료) 반영여부 6. 기타 문제점		
부서별(실·과) 의견			
협의개요	실·과별	제출의견	검토내용

[주민용]

의견수렴서

의견제출자 인적사항			
성명		생년월일	
주소		연락처	
의견제출 내용			
제출인 : (인 또는 서명)			